

공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경상남도교육감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2. 3.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진로교육과]

차 례

I. 목적	1
II. 기본 방침	1
III. 지원 자격	5
IV. 고등학교 전형시기별 전형계획	7
1. 전기학교 전형	7
2. 후기학교 전형	9
V. 연수 및 홍보	18
VI. 주요 업무 일정	19
[붙임1]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20
[붙임2]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	21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I 목적

1.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중·고등학교 교육의 연계 체제 확립
2.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합리성·타당성·다양성 제고

II 기본 방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88조, 제89조의2~제92조, 제97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고등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 일반고 :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특수목적고 :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자율고 :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 전·후기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학교 :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개정 2017.12.29.)
- 후기학교 : 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개정 2017.12.29.)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2.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체험위주교육전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체능학과, 특성화과)의 전형은 전기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에 의한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나. 전기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 전형 학교 포함)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별로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한다.

다. 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전기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의 다른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 2)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라. 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지원 해야 한다.
- 2) 외교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마. 전형 결과 입학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의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학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게시 필수**)하여야 하며,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은 모집 정원에서 정원 내 합격자를 뺀 인원으로 한다.

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며, 입학 후 전·편입학으로 충원한다.

사. 정원 미충원교의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에는 원서접수일 현재 불합격이 확정된 자 또는 미 지원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입학식 이후 수시모집 시 타 학교 합격자 또는 입학생을 합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학교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중원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한다.)

아.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수시모집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2023학년도 고입전형의 수시모집 기한은 2023. 5. 26.(금)로 한다.

4.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신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할 수 있다. 단,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형요소 및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과학고만 해당)를 전형자료로 하여 입학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100% 선발한다.

5.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형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배제(배제사항의 간접적·우회적 기재도 금지)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및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도교육청의 입학전형 점검 결과, 동일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학교와 개인은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5년 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함.)

6. 과학고, 외국어고는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모집 정원의 20% 이상으로 한다.

가.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 우선선발

나. 사회다양성전형 :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다.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학부모 확인서 첨부)

<사회통합전형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항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학교는 입학전형 이후 **1개월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8.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내신성적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석차연명부(학년석차백분율이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9.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은 개인이 검정고시에서 취득한 평균점수를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석차백분을 산출 조건표에 따라 산출한다.
10.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11. **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할 경우 학교는 사정 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3. **특수교육대상자**는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의 선정·배치 결과에 따른다.(의무교육)
14.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형업무에 공정성·합리성·타당성을 기하며,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 접수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 공개한다.
15. **이중 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한다.**

■ 이중지원 사례(예시)

- 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도내(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추가모집 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미등록 또는 학년 초 자퇴를 하고 **같은 학년도** 다른 고등학교 수시모집에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¹⁾**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가.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형 시기 및 타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일자 및 전형 일정이 다르더라도 2개교에 지원 불가)]

나.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전·후기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원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본 기본계획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다음 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18. 본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상위 법령·지침의 변경,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III 지원 자격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다.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소주동·덕계동·평산동 및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삼남면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1)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 학교 포함)

일반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211-1109, 1999.10.4.> <2007년 행정구역 개편>
 나.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414-839, 2002.07.29.>

※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부산시교육청 지원과-1656, 2021.3.2.>

4.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도내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5.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2022.3.1.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개 기관)

6. ‘군인자녀’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2012.12.20.)

■ 군인 자녀 :「군인복지 기본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7.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가.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²⁾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 나.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2)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거주지가 평준화 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³⁾에 지원할 수 있다.(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 2) 거주지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
8. 외고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 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위의 7번에 준한다.)

IV 고등학교 전형 시기별 전형계획

1. 전기학교 전형

가. 기본 방향

- 1)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 전기학교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타 전기·후기·추가·수시)에도 지원할 수 없다. 단,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일반고의 특성화과 포함)에 다시 지원할 수 있고,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3)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는 추천입학제를 신청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 비교과 주요 자료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학교별 필기고사,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 적성 검사 등은 금지한다. (추천입학제 신청은 전형 요강 승인으로 대체한다.)

나. 대상 학교별 전형 방법

1) 과학교

- 가)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나)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계획에 의한다.
- 다)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 라) 학교는 입학전형 이후 **1개월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3)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

- 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별로 별도의 내신성적 산출방식(반영 교과, 학년, 기간,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성적을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 나) 학교장은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와 관련된 특기자(음악, 미술, 체육, 무용, 컴퓨터 등)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 정원의 10%까지 특별 선발할 수 있다. 특기자 선발기준 및 방법은 해당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한다. 단, 체육·무용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방법에 따른다.
- 다)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입학 정원의 30% 이상(정원 내)으로 한다.
- 라) 마이스터고와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 마)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일정을 분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 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다. 학교별 공통사항

- 1)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2) 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할 경우 학교는 사정 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 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4) 합격점(컷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5)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 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6)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가)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나)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다) 3순위 :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 라) 4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 7)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8) 기타 사항
 - 가) 특성화고는 입학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전형요강에 명시한다.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인 색맹, 색약 등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삼간다.)
 -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교육지원청은 원서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이중원서 발급에 유의)
 - 다) NEIS 입·진학 업무 처리
 - (1)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입학업무 처리를 위해 선발된 입학대상자를 일괄 추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중학교 코드, 성명, 반 코드, 번호를 수집하여야 편리함(원서 양식 작성 시 유의)
 - (2) 학교 코드(10자리)는 기관마스터 ID와 전자서명인증서로 나이스에 접속하여 [시스템관리-조직코드관리-조직공동정보-기관별조직조회]에서 해당 학교 포함 전국 학교코드의 검색이 가능함
 - (3) 반 코드(2자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의 [학교정보-반정보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 코드와 반명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2. 후기학교 전형

가. 외국어고

- 1)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2)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계획에 의한다.
- 3)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

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4) 외국어고는 학과별로 선발한다.

5) 학교는 입학전형 이후 **1개월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나. 평준화지역 일반고(안)

(※ 본 내용은 '안'이며 향후 평준화지역 고입전형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1) 기본 방향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나) 전형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을 근거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한다.

다)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실시한다.

▣ 평준화지역 학군

- | | |
|----------------------|--------------------------|
| ● 1학군 : 창원시의 성산구·의창구 | ● 2학군 :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 ● 3학군 : 진주시 | ● 4학군 : 김해시 |
| ● 5학군 : 거제시 | |

※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아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창원대산고등학교, **북면1고등학교(가칭)**, 마산삼진고등학교, 대곡고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김해율하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이상 12개교)

라)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마) 외고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1)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⁴⁾에 지원할 수 있다.

4)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 (2)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거주지가 평준화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⁵⁾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0-18호, 2020.7.28.)

(나) 거주지가 비평준화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지역 학군에 지원

- 바) 학군별 학교 배정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지망학교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한다.

사)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에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 아)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해당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

2) 지원 방법

가) 경상남도 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나이스 교무업무 학적 정보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하여 출신 중학교별로 원서를 작성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나) 입학원서 작성 시에는 입학전형 합격 후 배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각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하여 제출한다. 단, 외고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지원할 경우 1지망은 외고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일반지원자와 동일하게 복수 지원한다.

■ 남·여별 지원 학교 수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학군(남자 14교, 여자 14교)	● 2학군(남자 8교, 여자 8교)
● 3학군(남자 7교, 여자 7교)	● 4학군(남자 9교, 여자 9교)
● 5학군(남자 7교, 여자 7교)	

▣ 평준화지역 해당(희망) 학군 지원(예시)

구분	1지망교	2지망교	3지망교	4지망교	5지망교	...
일반지원자	A교	B교	C교	D교	E교	...
동시지원자	외교(국제교, 자사고 포함)	A교	B교	C교	D교	E교

- (1) 우선배정신청서 제출자(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학생, 중증질환자)는 **1개교만** 지원한다.(학교 배정 방법 참조)
 - (2) 국가유공자 자녀와 특례입학대상자는 **3개교만** 지원한다.
- 다)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학군별 교육지원청은 고입원서 작성대장 비치)
-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로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마) 체육특기자 전형 응시자는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심사계획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바) 특례입학대상자는 도교육청의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계획에 따라 출신중학교(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 확인 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학군별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 개별 접수한다.

3) 학생 선발 방법(합격자 사정)

- 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입학 총 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하되, 일반지원자와 동시 지원을 희망하는 외교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 나) 합격점(컷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군별로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라) 체육특기자로 확정을 받은 자는 학군별로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마)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군별로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사)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 (1)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 3순위 :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 (4) 4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학교 배정 방법

가) 기본 원칙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 (1)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 성적(출신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평정한다.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1	4%	~ 4%이하
2	7%	4%초과 ~ 11%이하
3	12%	11%초과 ~ 23%이하
4	17%	23%초과 ~ 40%이하
5	20%	40%초과 ~ 60%이하
6	17%	60%초과 ~ 77%이하
7	12%	77%초과 ~ 89%이하
8	7%	89%초과 ~ 96%이하
9	4%	96%초과 ~ 100%이하

- (2)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bigcirc (\text{등급별 배정 인원}) = (\text{입학정원}) \times (\text{등급비율})$$

※ 입학 정원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실제 등급별 배정 인원은 우선배정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각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망학교에 추천·배정한다. 단, 동시 지원자는 제1차 추천·배정에서 제외되고, 제2차 추천부터 일반지원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천·배정한다.

(가) 제1차 추천

- 등급별 1지망자(일반지원자만 적용)를 대상으로 등급별 배정 인원의 100%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한다.

(나) 제2차 추천

- 제1차 추천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지원 미배정자와 동시 지원자 중 2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한다.

(다) 제3차 추천

- 제2차 추천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3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한다.

(라) 제4차 추천

- 제3차 추천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다시 제1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한다.

(마) 제5차 추천 ~ 제17차 추천

- 제4차 추천에서 배정 인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제2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하는 방법으로, 제5차..., 제17차(1학군의 경우)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한다.

(바) 제18차 추천(1학군의 경우)

- 제17차 추천에서 배정 인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동시지원자만 해당) 중 등급 관계없이 15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배정한다.

(4)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전체 합격자 수를 총 정원으로 하여, 학교별로 남·여 학급수 및 정원을 조정하여 배정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 학생을 차순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 배정 요청 학생) 만약 가·피해 학생이 마지막 지망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직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6) 다음 학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가)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체육영재 육성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나) 지체부자유자(뇌병변장애 포함)로 판정된 자와 중증질환자⁶⁾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다) 다자녀 학생⁷⁾이 전형에 합격한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재학 중인 학

6)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로 종합병원장 진단서 제출자

7) 다자녀 학생: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교에 우선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정원 내' 우선 배정

- (7)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와 특례입학대상자는 각각 학군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하되, 학교별로도 해당 학교 정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정한다.
- (8)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각각 동일교 배정 희망원을 받아 추첨에 의해 배정 희망 학교 순으로 형(누나, 언니, 오빠)이 배정된 학교에 동생을 '정원 외'로 배정한다.
- (가) 동일교 배정을 원할 경우,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모든 지망학교를 동일하게 기록하되, 남·여 혼성 쌍생아는 남·여 공학 학교만 기록
- (나) 동일교 배정을 희망한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지망한 학교 중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지망학교에 추가 배정
- (9) 평준화지역(洞지역) 내 중학교(학교군) 졸업(예정)자가 전 가족(부모,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 1일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농·어촌지역(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에 합격하고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10) 거제시 농어촌지역(이하 '면 단위'라 함) 중학교 졸업(예정)자⁸⁾가 평준화지역(거제시) 일반고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면 단위에 소재한 일반고를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나)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1)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일

- 합격자 발표 : 2023. 1. 6.(금) 10:00
- 합격자 배정학교 발표 : 2023. 1. 13.(금) 10:00

(2) 합격자 및 배정학교 확인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출신중학교

- (가) 우리 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나이스를 통해 출신중학교장에게 일괄 통보
- (나) 타 시·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는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합격증(배정통지서) 교부
- (다) 학교별 예비소집 및 등록 방법 : 배정학교 발표 시 안내

※ 합격자 및 배정 학교 발표일은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사항

- (1) 거주지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2)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수시모집 미 실시)은 학군별로 실시한다.
- (가) 추가모집 지원 시 배정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없다.(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

8) 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年數)만 인정**: (1) 학생이 거제시 면 단위 중학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예정)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할 것 (2) 학생 본인이 거제시 면단위 초·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및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 졸업(예정) 시까지)할 것

- (나)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미달 인원 만큼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한다.
- (다) 미 충원교에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대상자와 미 충원교의 성비가 불일치 시 학군 내 남·여별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한다.

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내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1) 기본 방향

- 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다. 단, 자율학교 일반고는 학교별 별도의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성적을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2) 지원 방법

- 가) 지원자는 고등학교별 실시계획에 따라 원서작성 후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또는 학교별) 접수한다.
-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교육지원청은 고입원서 작성대장 비치)
- 다)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 라)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 마)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 절차는 해당 고등학교별 실시계획에 따른다.
- 바)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3) 전형 방법

- 가) 전형 일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 나) 합격점(컷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라)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정 기준에 관계 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교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보훈지청장의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마) 체육특기자는 내신성적에 관계 없이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바)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교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도교육청 특례입학전형 지침 준수)
- 사)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아)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1)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 3순위 :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 (4) 4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V 연수 및 홍보

1. 2023학년도 고입전형 관리업무는 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학력인정고등학교는 본 계획에 준해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3.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한다.
4. 중·고등학교 고입전형 업무 담당자 및 중학교 3학년 부장(담임)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바른 진학 및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VI 주요 업무 일정(예정)

업무 내용			일 정	비 고
기본계획 설명회			2022. 5. 9.(월) ~ 5. 13.(금)	중·고등학교 부장 및 교감, 지원청 고입 담당자, 중3 부장(담임)
학교별 실시계획 승인신청~공고 일정				
고입 전형 요강	승인 신청	특목고(과고)	2022. 4. 21.(목)까지	일정을 참고하여 학교별 실시계획 수립 후 제출
		특목고(체육고)	2022. 5. 4.(수)까지	
		특목고(마이스터고3)	2022. 6. 10.(금)까지	
		특목고(예술고)	2022. 6. 10.(금)까지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2022. 7. 1.(금)까지	
		특목고(외고)	2022. 7. 1.(금)까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승인	특목고(과고)	2022. 5. 6.(금)까지	
		특목고(체육고)	2022. 5. 13.(금)까지	
		특목고(마이스터고3)	2022. 7. 8.(금)까지	
		특목고(예술고)	2022. 7. 8.(금)까지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2022. 7. 29.(금)까지	
		특목고(외고)	2022. 8. 26.(금)까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공고	특목고(과고)	2022. 5. 13.(금)까지	전형 시작일 3개월 전 까지 공고
		특목고(체육고)	2022. 5. 20.(금)까지	
		특목고(마이스터고3)	2022. 7. 15.(금)까지	
		특목고(예술고)	2022. 7. 15.(금)까지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2022. 8. 5.(금)까지	
		특목고(외고)	2022. 9. 8.(목)까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 평준화지역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원서접수 2022. 12. 19.(월) ~ 2022. 12. 21.(수)	합격자 발표 : 2023. 1. 6.(금) 합격자 배정 발표 : 2023. 1. 13.(금)

※ 내신성적은 3학년 2학기 2차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2022. 11. 23.(수)까지 산출하고, 비교과는 2022. 11. 21.(월)까지의 사항을 반영한다.

※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개정, 타 시·도 일정, 학생수용계획 확정, 감염병, 천재지변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시기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전기 (43)	특목고 (8)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1 (공군항공과학고)	2022.7.4.(월) - 7.15.(금)	2022.7.18.(월) - 10.27.(목)	2022.10.28.(금)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3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2022.10.17.(월) - 10.21.(금)	2022.10.26.(수) - 11.8.(화)	2022.11.9.(수)	
		과학고2 경남과고, 창원과고	2022.8.30.(화) - 9.1.(목)	2022.9.5.(월) - 12.1.(목)	2022.12.2.(금)	
		체육고1 (경남체육고)	2022.8.29.(월) - 9.2.(금)	2022.9.5.(월) - 9.16.(금)	2022.9.23.(금)	
		예술고1 (경남예술고)	2022.10.17.(월) - 10.20.(목)	2022.10.21.(금) - 10.27.(목)	2022.11.1.(화)	
	특성 화고 (34)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30 거제여자상업고, 거창공고, 경남간호고, 경남관광고, 경남로봇고, 경남산업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마산공 고, 밀성제일고, 사천여고, 선명여고, 신반정보고, 진영제일고, 진주기계공고, 창녕공고, 창녕슈퍼텍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 초계고, 한일여고, 함양제일 고 ※ 일반고 특성화과[삼가고(조리과), 창녕여고(보건간호과)]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김해건설공고) 체험위주 특성화고 4 태봉고(간디고, 지리산고, 원정고)	2022.11.28.(월) - 12.1.(목)	2022.12.2.(금) - 12.5.(월)	특별전형 2022.12.6.(화)	
			2022.12.6.(화) - 12.8.(목)	2022.12.9.(금) - 12.12.(월)	일반전형 2022.12.13.(화)	
	고등기술 학교(1)	경남전자고	2022.12.5.(월) - 12.8.(목)	2022.12.9.(금) - 12.12.(월)	일반전형 2022.12.13.(화)	
	전기 미달학교	전기 미달학교	2022.12.13.(화) - 12.14.(수)	2022.12.15.(목)	2022.12.16.(금)	
	특목고 (2)	외국어고 2 김해외고, 경남외고	2022.12.19.(월) - 12.21.(수)	2022.12.22.(목) - 12.27.(화)	2022.12.28.(수)	
후기 (151)	일반고 (149)	비평준화지역(자율학교 지정 65) 거창중앙고, 고성고, 곤양고, 군북고, 금남고, 남해고, 단성고, 동원고, 명덕고, 물금고, 밀성고, 밀양고, 밀양동명고, 범어고, 사천고, 산청고, 삼가고, 삼랑진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중앙고, 서상고, 신등고, 아림고, 안의고, 아로고, 양 산고, 양산남부고, 옥종고, 용남고, 웅천고, 진교고, 진해고, 창선고, 충렬여고, 통 영고, 통영여고, 하동여고, 창원대산고, 진주의고, 진서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 고, 김해수남고, 김해율하고, 장유고(평준화지역 학교장전형)	2022.12.19.(월) - 12.21.(수)	2022.12.22.(목) - 12.27.(화)	2022.12.28.(수)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대성일고, 덕산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 해해성고, 세종고, 웅천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육아고, 칠원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함천고, 효암고) 비평준화지역(자율학교 미지정 21) 대곡고, 남지고, 서창고, 밀양여고, 보령고,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웅상고 (가칭)물금2고, 의령고, 의령여고, 진해세화여고, 진해여고, 진해용원고, 진해중앙고, 철성고, 함천여고, 충무고 (가칭)북면고, 마산삼진고, 진영고(평준화지역 학교장전형)				합격자 발표 2023.1.6.(금)
		평준화지역(교육감전형 62) (구)창원시 19교, (구)마산시 13교, 진주시 11교, 김해시 12교, 거제시 7교				합격자 배정 발표 2023.1.13.(금)
추가	추가	평준화지역 미달 학군, 전·후기 미달학교	2023.1.11.(수) - 1.16.(월)	2023.1.17.(화)	2023.1.19.(목)	
수시	수시	추가모집 미달학교	2023.2.6.(월) - 5.26.(금)	수시	수시	

※ 일정 및 학교구분은 관련 법령 개정, 타 사·도 일정, 학생수용계획 확정, 감염병, 천재지변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학교별 전형 관련 세부 일정은 반드시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람)

※ 각종학교(밀양영화고, 경남고성음악고, 김해금곡고, 거창연극고, 남해보물섬고) 전형은 전기 특성화고 일정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모집요강에 따른다.

※ 학력인정고(경남미용고) 전형은 전기 특성화고 일정과 같으나, 학교 모집요강에 따르며 본 지침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 () 속에 기재된 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임
[붙임2]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

I 목 적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연계 체제를 확립한다.
3.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II 기본 원칙

1. (적용 대상) 이 지침은 2022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등에게 적용한다.
2. (산출 근거)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3. (기준일) 교과는 3학년 2학기 2차 고사까지 반영하여 2022. 11. 23.(수)까지 산출하고, 비교과는 2022. 11. 21.(월)까지의 사항을 반영한다.
4. (총점, 합격자 사정 자료) 내신성적 총점은 200점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내신석차 백분율을 합격자 사정 자료로 한다.
5. (배점 및 비율) 영역별 배점과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비율	총 점	석차 백분율
교과		성적 존재 학기에 한해 학기별 동일 배점 부여			160점	80%	200점	%
비교과	출결상황	5점	5점	5점	40점	20%		
	봉사활동	15점						
	학교활동	2점	2점	2점				

가. 영역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며 교과영역 합계 160점(80%), 비교과영역 합계 40점(20%) 만점으로 산출한다.

나. 교과 영역은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중에서 성적이 존재하

지 않는 학기는 제외하고,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다. 비교과영역은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으로 구분하고 전 학년을 반영하되, 영역별 배점은 각각 15점, 15점, 10점으로 한다. 단, 학교활동의 기본점은 4점이며, 가산점은 학년별로 2점 범위에서 활동에 따라 가산한다.

6. (석차백분율) 석차백분율은 총점에 따른 개인별 석차와 학년 재적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7. (석차연명부) 중학교는 내신석차 백분율이 기록된 소정의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 전형에 활용한다.
8. (보존 연한) 석차연명부를 비롯한 내신성적 산출물은 출력 후 결재를 득하여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 석차연명부(학교장 직인 날인)
 - 종합일람표(반별 성적일람표)
 - 산출보조부 4종(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III 산출 방법

1. 졸업예정자(경남)

가. 교과 점수(160점, 80%)

- 1) 교과 점수는 학기별 점수의 총합으로 한다.
- 2) 학기별 점수(S_{ij})는 성취도 환산점과 원점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S_{ij} = \frac{20}{K} \left(\frac{a_{ij}}{b_{ij}} + \frac{c_{ij}}{d_{ij}} \times 0.03 \right)$$

i : 학년, j : 학기, K :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 수

a_{ij} : 성취도 환산점총합(체육, 예술교과 포함), b_{ij} : 과목수(체육, 예술교과 포함)

c_{ij} : 원점수 총합(체육, 예술교과 제외), d_{ij} : 과목수(체육, 예술교과 제외)

■ 교과 점수는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취도 환산점 산출

■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성취도 평어 득점	A 수	B 우	C 미	D 양	E 가
	100~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환산점수	5	4	3	2	1

■ 단, 체육·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등급/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성취도 등급 득점	A 우수	B 보통	C 미흡
	100~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환산점수	5	4	3

■ 성취도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출결상황 점수

- 1) 합계는 15점(7.5%)으로 하고, 학년별 배점은 5점으로 한다.
- 2) 출결상황 점수는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학년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3) 결석일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기타 결석은 제외하고 미인정 결석만으로 산출한다.
 -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한다. (3회 미만은 버림)
- 4) 미인정결석 일수에 따른 학년별 출결상황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일수	0	1~2	3~4	5~6	7~8	9~10	11~12	13~14	1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기본점)

다. 봉사활동 점수

- 1) 학년 구분 없이 봉사활동 시수가 3년간 **10시간** 이상이면 15점(7.5%)으로 한다.
- 2) 3년간 활동 시수에 따른 봉사활동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시수	0~1	2	3	4	5
점수	6(기본점)	7	8	9	10
시수	6	7	8	9	10시간 이상
점수	11	12	13	14	15

- 3) 재 취학생 또는 타 시·도 전입생의 봉사활동 점수도 위 표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봉사활동이 평어로 기록된 학년은 “가”는 5점, “나”는 4점, “다”는 2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학교활동 점수

- 1) 합계는 10점(5.0%)으로 하고, 기본점은 4점, 학년별 가산점은 2점으로 한다.
- 2) 가산점의 인정 기준(대상, 기간, 횟수, 점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3) 가산점 인정 기준(예시)
 - 가) 모범학생 표창(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 0.5점
 - 표창(상) :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 나) 각종 교내 대회 학교장 표창(상) : 0.5점
 - 다)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임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 : 0.5점
 - 임원 :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임원을 겸임한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마. 석차연명부 작성

- 1) 소정의「석차연명부」를 <서식 1>, <서식 2>와 같이 작성한다.

- 2) 석차는 총점을 기준으로 남녀 구별 없이 통합하여 산출한다.
- 3) 총점이 같을 경우, 석차는 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고득점 순으로 산출하며, 그래도 같을 경우에는 동석차로 처리한다.
- 4) 석차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석차백분율} = \text{석차} \div 3\text{학년 재적수} \times 100 \text{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3학년 재적수는 교과성적 산출 기준일 2022. 11. 23.(수) 인원수로 한다.

- 5) 교과성적 산출 기준일 현재, 3학년 재적수가 10명 미만인 소인수 학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먼저, 실제 재적수를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 나) 별도로, 가상 재적수 10명을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보정하고, 이에 따라
내신성적이 산출된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한다.

2. 졸업예정자(타 시.도)

- 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산출 규정에 의해 산출된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이 기록된 경우)를 그대로 적용한다.
- 나. 석차연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원점수가 기록된 과목만으로 <서식 3>의 「내신성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한다. (단, 비교과 영역은 제외)

3. 졸업자

- 가. 석차연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 당해의 내신석차 백분율을 그대로 인정한다.
- 나. 석차연명부가 없는 경우(비교과 영역은 제외)

- 1) 2015. 2. 졸업자

원점수가 기록된 과목만으로 <서식 3>의 「내신성적증명서」를 작성하여 고입전형에 활용한다.

- 2) 1997. 2. 졸업자부터 2014. 2. 졸업자까지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과목별 석차와 재적수(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평균을 내신성적 석차백분율로 한다.

- 나) <서식 4>의 「내신성적증명서」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한다.

- 석차백분율 = (1학기 석차백분율 + 2학기 석차백분율) ÷ 2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학기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 ÷ 이수 과목 수
- 과목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 ÷ 과목별 재적수(수강자 수) × 100

- 3) 1996. 2. 이전 졸업자까지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석차와 재적수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나) <서식 4>의 「내신성적증명서」를 작성하여 고입전형에 활용한다.

$$\text{석차백분율} = \text{석차} \div \text{재적수} \times 100 \text{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검정고시 합격자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한 시·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건표>를 따른다.

연도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건표(예시)

(실제 조건표는 추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함)

평균 점수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	0.48	0.41	0.51	0.68	0.00	0.77	0.00	0.00	0.00	0.27	0.00	2.77	
99	1.45	2.04	2.20	2.23	1.32	3.07	0.61	0.77	1.00	0.81	1.19	5.93	
:	:	:	:	:	:	:	:	:	:	:	:		
61	96.62	96.93	98.98	98.80	97.80	97.70	98.78	98.97	99.00	98.38	98.51	99.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석차백분율은 합격연도와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위 조건표를 참조하여 구한다. 이때, 조건표 상의 평균점수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로 한다.

IV 기타 사항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관리된 학생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에 따라 재학생 수에 포함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귀국자 중 정당한 해외 출국자(인정유학자)는 해외에서 취득한 봉사활동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해외귀국자 중 미인정 유학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해당 학년 출결상황, 봉사활동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며, 해외에서 취득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4. 비교과 영역의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각 영역별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해당하는 지원자 및 내신석차연명부 마감일 이후 중도입국자 등 석차연명부가 없는 경우 최저점(100%) 부여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봉사활동)을 참조하여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서식 1> 석차연명부 표지(A4, 상철)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졸업예정자)

작성일 : 2022. 00. 00.

○○중학교

<서식 2> 석차연명부 내용(A4, 상철)

석차연명부

석차	3학년		성명	성별	영역별점수				총점	석차 백분율
	반	번			교과	출결 상황	봉사 활동	학교 활동		
325					160	15	15	10	200	%
1	07	05	○○○	남						
:	:	:	:	:						
:	:	:	:	:						
325	11	34	○○○	여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22. 00. 00.

○ ○ 중 학 교 장 [인]

- * 모든 쪽의 하단에 학교장이 확인하고 직인으로 날인함.
- * 재적수 : 석차 바로 아래 칸에 작성함.
- * 반/번호 : 각각 두 자리 숫자로 표기함.(예: 7반은 07로, 5번은 05로)
- * 교과 점수 :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 *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점수 :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출함.
- * 석차 : 총점을 기준으로 산출함.
 - 총점이 같을 경우 : 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고득점 순으로 산출하고,
 - 그래도 같을 경우 : 동석차로 처리함.
- * 석차백분율 : 석차와 3학년 재적수를 기준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 보정 처리 : 교과성적 산출 기준일 현재, 3학년 재적수가 10명 미만인 소인수 학교

- 먼저, 실제 재적수를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 석차연명부를 작성함.
 - 별도로, 가상 재적수 10명을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보정하고, 이에 따라 내신성적이 산출된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함.

<서식 3> 내신성적증명서 (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타 시도 졸업예정자용 및 2016. 2. ~ 2023. 2. 졸업자)

내신성적 증명서

졸업(예정) 년월 : 년 월 3학년 반 번 성별 이름 :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선택1			선택2			선택3			과목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부분을 입력하면 내신석차백분율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각 학기마다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비워두고, 이수한 과목만 입력합니다.

내신석차백분율 :

2022. . .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시·도 중학교장 {직 인]

- * 지원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작성자(확인자): 출신학교 담당자(학교장)
- * 기재 과목 : 원점수가 기록된 과목만 작성한다.(체육·예술과목은 제외하고 해당 과목이 없는 경우는 비워둠)
- * 석차백분율 산출 절차 및 방법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규누적 분포값을 구한다.
 - (100-정규누적분포값)을 석차백분율로 간주한다.
 - 해당학기 백분율은 과목별 백분율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최종 내신석차백분율은 성적 존재 학기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서식 4> 내신성적증명서 (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2014. 2. 이전 졸업자용)

내신성적증명서

3학년		성명	성별	졸업연월	석차백분율 (%)
반	번				

2022. . .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시·도 ○○중학교장 ○○○ [직인]

* 작성 대상 : 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2014.2. 이전 졸업자 (단, 비교과 영역은 제외)

* 졸업연월 : 예시) 1996.2. / 1997.2.

* 석차백분율 : 학교생활기록부를 참조하되, 졸업 시기에 따라 달리 기록함

- 1996.2.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석차와 재적수(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 석차백분율 = 석차 ÷ 재적수 ×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997.2. 졸업자부터 2014.2.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과목별 석차와 재적수(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평균을 내신성적 석차백분율로 한다.

· 석차백분율 = (1학기 석차백분율 + 2학기 석차백분율) ÷ 2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학기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 ÷ 이수 과목 수

· 과목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 ÷ 과목별 재적수(수강자수) × 100

<서식 5> 교과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교과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22.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1	○ ○ ○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합계												
		과목수												
		학기별 점수												
교과성적														

<서식 6> 출결상황 산출 보조부

출결상황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22.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학년	무단 결석 일수	무단					합산 결석 일수	점수	출결상황 성적
				지각수	조퇴수	결과수	소계	환산 결석 일수			
1	○○○	1									
		2									
		3									

<서식 7> 봉사활동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봉사활동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22.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활동시수	봉사활동 성적
		활동 시수	활동 시수	활동 시수		
1	○○○					

<서식 8> 학교활동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학교활동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22.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기본점	가산점			학교활동 성적
			학년	내역(점수)	합계(1.0)	
1	○○○	4	1			5.0
			2			
			3	백일장 우수(0.5), 학생회장(0.5)	1.0	

<서식 9> 내신성적 종합일람표

내신성적 종합일람표 2022.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총점	석차 백분율	내신성적	석차